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신화산업개발(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58				(전화번호 : 061-371-9700)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건물명 화순군청 본관동 (3층 및 4층)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동헌길 23		
	연면적(㎡)				작업기간 2020. 08. 29 (1일간)		
	석면건축자재[(m)·면적(㎡)·부피(㎡)] : 531.76 ㎡ (천장재)						
측정기관	대표자 (주)유원엔지니어링 기 노 갑				사업자등록번호 410-86-09352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4-8 (062-956-2496)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장비	유량	측정일시	측정 결과(f/cc)	검출석면
	별첨보고서 참조						
측정지점			측정사진		측정시간		
별첨 보고서참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0 년 9 월 1 일							
제출인				화순군수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화순군청사 천장 텍스
철거공사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보고서 (2차)



(주)유원엔지니어링

제 출 문

화순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화순군청사 천정 텍스 철거공사중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의 2차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1일



(주) 유윈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33 (062)956-2496



요 약 문

당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의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석면비산정도측정 보고서』로 보고 합니다.

A. 측정개요

구분	내용
1. 측정의뢰자	화순군수
2. 공사명	화순군청사 천정 텍스 철거공사
3. 측정대상 및 범위	화순군청 본관동 일원
4. 측정일시	2020년 8월 29일 (1일간)
5. 측정기관	(주)유원엔지니어링
6. 측정위치 및 유량	측정결과에 표기
7. 분석방법	위상차 현미경법(PCM)

B. 측정 및 분석결과

(1) 측정지점별 측정개수 및 포집 유량

측 정 지 점	측정 개수	포집유량 (ℓ)	검출한계
(1) 부지 경계선	4	2400 이상	<u>0.01 개 / CC</u> 단, 0.01 개/CC 미만일 경우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며 0.01 개/CC 이상일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	2	1200 이상	
(3) 위생설비 입구	1	400 이상	
(4) 갱의실 입구	1		
(5) 음압기 토출구	4		
(6) 폐기물 반출 및 야적	2		
(7) 폐기물보관지점	1		

(2) 측정개수 및 분석결과

시료번호	측정지점	총 유량 (ℓ)	측정결과 (f/cc)	초과여부 (검출한계:0.01/CC)
# 1	부지경계선①	2420	0.002	검출한계 미만
# 2	부지경계선②	2460	0.001	검출한계 미만
# 3	부지경계선③	2440	0.001	검출한계 미만
# 4	부지경계선④	2420	0.001	검출한계 미만
# 5	위생설비 입구	412	0.003	검출한계 미만
# 6	갱의실 입구	408	0.002	검출한계 미만
# 7	작업장 주변①	1240	0.002	검출한계 미만
# 8	작업장 주변②	1220	0.003	검출한계 미만

시료번호	측정지점	총 유량 (ℓ)	측정결과 (f/cc)	초과여부 (검출한계:0.01/CC)
# 9	음압기토출구①	412	0.002	검출한계 미만
# 10	음압기토출구②	404	0.003	검출한계 미만
# 11	음압기토출구③	416	0.004	검출한계 미만
# 12	음압기토출구④	408	0.003	검출한계 미만
# 13	폐기물 반출 및 야적	412	0.004	검출한계 미만
# 14	폐기물 야적장	420	0.002	검출한계 미만
# 15	폐기물 보관지점	404	0.001	검출한계 미만

C. 종합의견

화순군청사 천정 텍스 철거공사중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변에서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공기중에서 석면물질이 위 측정결과와 같이 검출되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함.

2020 년 9 월 1 일



(주) 유 윈 엔 지 니 어 링



1. 석면비산정도 측정 개요

1. 측정 의뢰자
2. 측정 목적 및 대상
3. 측정 기관
4. 측정 일시

2.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분석 방법

1. 측정 관련 법적근거
2. 측정 방법
3. 공기중시료 채취
4. 채취시료 분석 방법

3.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

1. 측정 위치
2. 측정관련 사진대지
3. 분석결과

별첨 .

- (1) 측정자격(석면조사기관지정서) 사본

1. 석면 비산정도 측정 개요

1. 측정 의뢰자

측정의뢰자	화순군수
-------	------

2. 측정 목적 및 대상(범위)

측정목적	화순군청사 천정 텍스 철거공사중 작업장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범위	화순군청 본관동 일원

3. 측정기관

측정기관	(주)유원엔지니어링 (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 / 제2010-12000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4-8 ☎(062)956-2496
측정자	최 인 혜 (제교20180614003005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분석자	기 노 갑 (제교20170624002029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측정기간

측정 기간	2020년 8월 29일 (1일간)
-------	--------------------

2.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분석방법

1. 측정 관련 법적 근거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근거

2. 시료채취 시기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2장 제3조 3항 근거

③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3. 시료채취 지점 선정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3장 제4조 2항 근거

②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채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4. 시료채취 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4장 제5조 1항 근거

①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5. 분석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4장 제7조 1항 근거

①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법, 주사전자현미경(SEM)법,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6. 분석기관 등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 제5장 제9조 1항 근거

①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1.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 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 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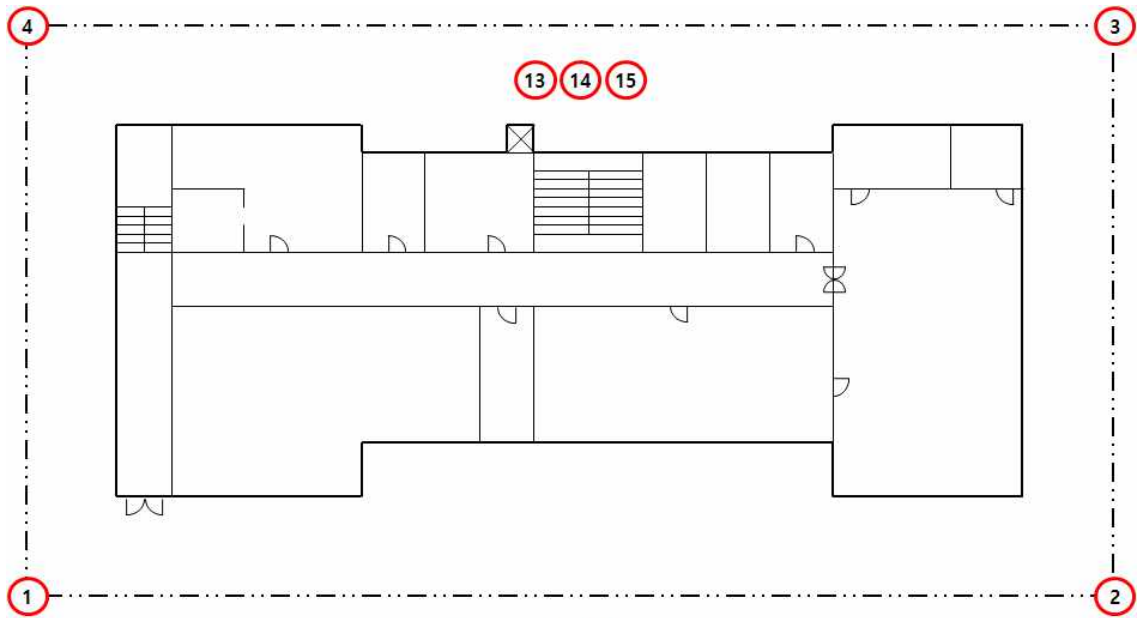
3.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1. 측정 위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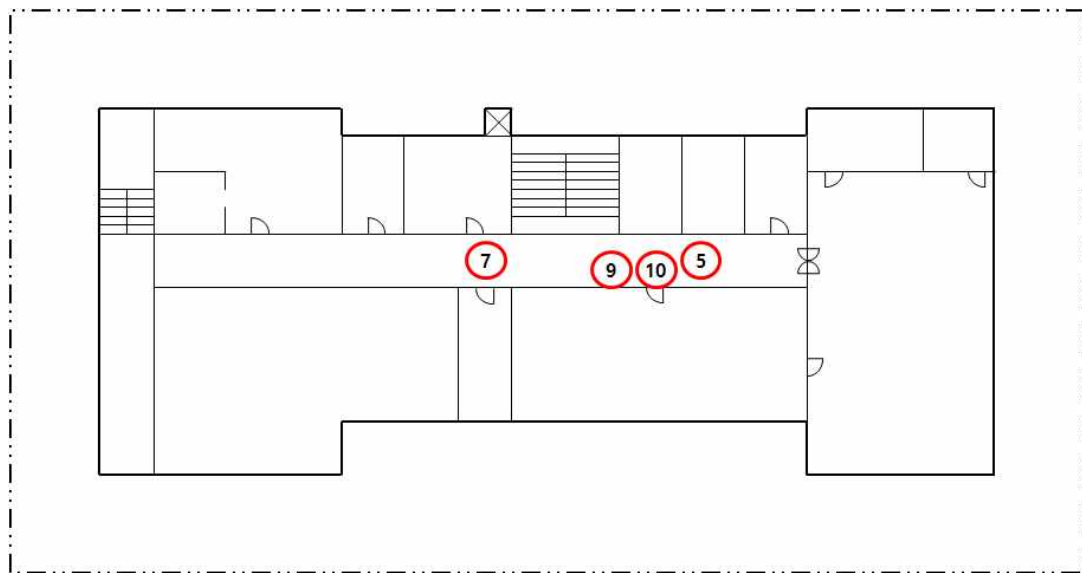
지점	지점수	측정 예	비고
1. 부지경계선	4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단, 작업장 부지 경계선중 비산석면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보행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음 - 부지경선 높이 1.2-1.5m
			
			
			
2.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3. 음압기토출구 주변	전수(1개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4. 작업장주변	실외(실내)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5.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2. 측정위치도, 사진대지 및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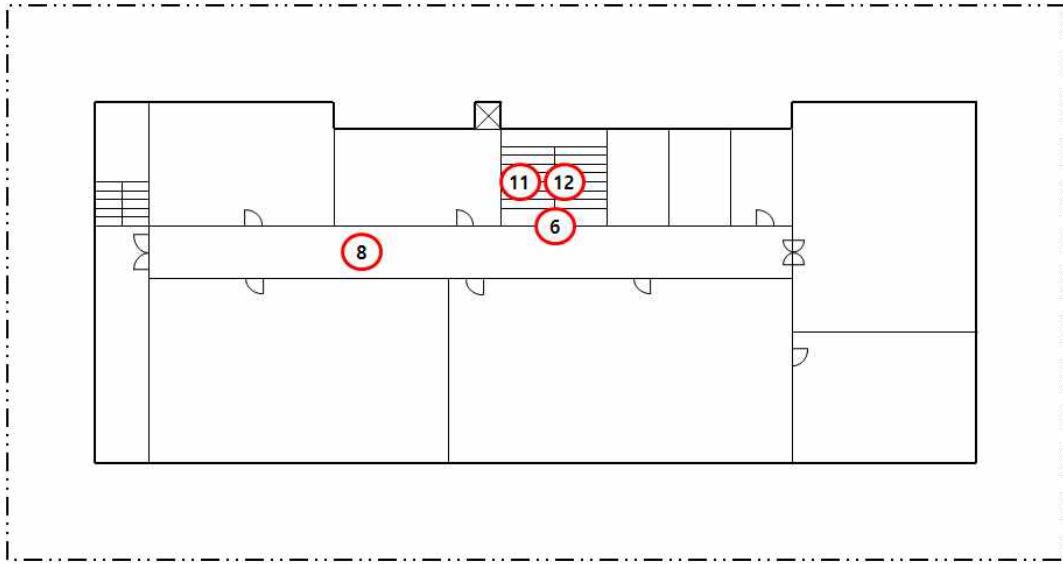
(1) 측정지점 (8월 29일)



화순군청 본관동 1층



화순군청 본관동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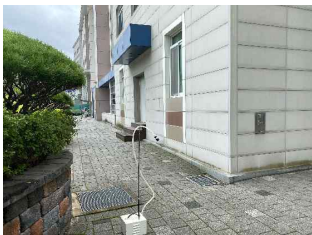
화순군청 본관동 4층

(2) 측정결과 (8월 29일)

시료번호	측정지점	총 유량 (ℓ)	측정일시	측정결과 (f/cc)	초과여부 (검출한계:0.01/CC)
# 1	부지경계선①	2420	09:00~12:20	0.002	검출한계 미만
# 2	부지경계선②	2460		0.001	검출한계 미만
# 3	부지경계선③	2440		0.001	검출한계 미만
# 4	부지경계선④	2420		0.001	검출한계 미만
# 5	위생설비 입구	412	09:20~10:00	0.003	검출한계 미만
# 6	갱의실 입구	408	13:20~14:00	0.002	검출한계 미만
# 7	작업장 주변①	416	10:00~11:40	0.002	검출한계 미만
# 8	작업장 주변②	420	13:20~15:00	0.003	검출한계 미만
# 9	음압기토출구①	412	10:00~10:40	0.002	검출한계 미만
# 10	음압기토출구②	404		0.003	검출한계 미만

시료번호	측정지점	총 유량 (ℓ)	측정일시	측정결과 (f/cc)	초과여부 (검출한계:0.01/CC)
# 11	음압기토출구③	416	13:20~14:00	0.004	검출한계 미만
# 12	음압기토출구④	408		0.003	검출한계 미만
# 13	폐기물 반출 및 야적	412	15:00~15:40	0.004	검출한계 미만
# 14	폐기물 야적장	420		0.002	검출한계 미만
# 15	폐기물 보관지점	404	16:00~16:40	0.001	검출한계 미만

(3) 측정사진 (8월 29일)

측정 지점	비산측정시작 사진	비산측정종료 사진	측정시간
1. 부지경계선① (남서측)			09:00~12:20 (200분)
2. 부지경계선② (남동측)			
3. 부지경계선③ (북동측)			
4. 부지경계선④ (북서측)			
5. 위생설비 입구 (3층 복도)			09:20~10:00 (40분)

측정 지점	비산측정시작 사진	비산측정종료 사진	측정시간
6. 강의실 입구 (4층 복도)			13:20~14:00 (40분)
7. 작업장 주변 (3층 복도)			10:00~11:40 (100분)
8. 작업장 주변 (4층 복도)			13:20~15:00 (100분)
9. 음압기 토출구① 10. 음압기 토출구② (3층 토출구)			10:00~10:40 (40분)
11. 음압기 토출구③ (4층 토출구)			13:20~14:00 (40분)

측정 지점	비산측정시작 사진	비산측정종료 사진	측정시간
12. 음압기 토출구④ (4층 토출구)			13:20~14:00 (40분)
13. 폐기물 반출 및 야적 (본관동 후면)			15:00~15:40 (40분)
14. 폐기물 야적장 주변 (본관동 후면)			
15. 폐기물 보관지점 (본관동 후면)			16:00~16:40 (40분)

석면조사기관 지정서(최초)

기관명	(주)유원엔지니어링	
소재지	(506-253)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3-33번지	
대표자성명	기노갑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한 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관할지역 대행(지정)한 계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대행(지정)지역	전국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0년 02월 18일

광주지방노동청

